

2023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3. 11. 21.(화) 오전7시30분
-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3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3. 11. 10.	
이사 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 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07:30~10:20

2.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헌(서울 중구 서애로 33)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이사 : 김종철, 김동건, 김호정, 박정운, 문휘창, 양인집, 이돈구, 최맹호
- 불참 이사 : 없음
- 참석 감사 : 윤규섭
- 불참 감사 : 배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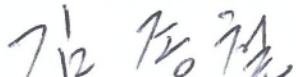


4. 안건

가. 심의안건

- (1)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 (2)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안)
-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 예정가격 감액 매도(안)
- (4) 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5)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변경 제출(안)
- (6)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5. 성원보고 및 개최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재적이사 8인 중 8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간인(서명)			
--------	---	--	---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3년 제10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보고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 김종철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양인집 이사 :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위원회 검토 결과, 각급 학교 및 기관들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음.
-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입 부분에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20억원 감액, 법인전입금 10억원 증액(총30억원), 사학진흥재단 기채 19억원 증액 등 수입은 본예산 대비 85억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보수 12억원 감액, 송도 세금, 관리운영비 40억원 증액 등 본 예산 대비 85억원 증액 편성하여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한국외국어대학교(합산) 기준 243,992백만원, 산학협력단 48,784백만원, 용인제2기숙사(SPC) 4,902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음.
- 최서연 기획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00백만원 감소한 34,483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학협력단은 720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 박정식 법인재무처장 :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총액기준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2,940백만원, 법인일반회계 5,287백만원, 법인수익회계 15,282백만원, 글로벌홀기숙사(SPC) 4,107백만원, 동원안전시스템(주) 8,490백만원, (주)이지피에스 4,313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	-----	-----	---

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 찬성으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법인일반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주)외대어학연구소, 용인제2기숙사(SPC), 글로벌홀기숙사(SPC), 동원안전시스템(주), (주)이지피에스)”, “한국외국어대학교(후생파트, 지식출판콘텐츠원, 산학협력단 포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각각 승인·의결하다.

□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승인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23 본예산 (A)	2023 추경예산 (B)	증감 (B-A)	승인 여부	비고
한국외국어대학교(합산)	233,347	243,992	10,645	원안 승인	
한국외대(개별)	212,825	221,334	8,509	원안 승인	
사업지원처	15,554	17,537	1,983	원안 승인	
국제학사	2,205	2,084	-121	원안 승인	
모현학사	775	898	123	원안 승인	
후생파트	2,714	3,079	365	원안 승인	
지식출판콘텐츠원	1,597	1,671	74	원안 승인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42,959	48,784	5,825	원안 승인	
용인제2기숙사(SPC)	4,687	4,902	215	원안 승인	
글로벌홀기숙사(SPC)	3,992	4,107	115	원안 승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대	32,683	34,483	1,800	원안 승인	
산학협력단	254	720	466	원안 승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17,560	22,940	5,380	원안 승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법인일반	4,390	5,287	897	원안 승인	
법인수익	15,035	15,282	247	원안 승인	
(주)외대어학연구소	11,700	13,500	1,800	원안 승인	
동원안전시스템(주)	8,077	8,490	413	원안 승인	
(주)이지피에스	3,293	4,313	1,020	원안 승인	

* 별첨 :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2)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안)

-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2023학년도 본예산 책정시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았던 교내 노후 기자재 및 장애인(학생) 안전 확보 공사를 위한 기채 금액 중 일부(5억2백만원)를 감액하고, 인천 송도 토지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차입금을 추가(25억원)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간인(서명)	김종철	김광호	
--------	-----	-----	---

용자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채 승인 내역

1. 기채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2. 기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기채금액	기채기간	금리	상환계	비고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E.H.P 설치 공사	278,000	2년 거치 8년 상환	연 2.72%	교비계보공음 (담보없음)	5억2백만원 감액
서울캠퍼스 대학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24,000				
서울캠퍼스 행정사무실 E.H.P 설치 공사	118,000				
글로벌캠퍼스 교양관 엘리베이터 및 외부계단 공사	540,000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공조실 복구 공사	238,000				
소 계	1,598,000				
2023학년도 종합부동산세	2,500,000	1년 거치 4년 상환	상등	상등	추가 기채
총 금액	4,098,000				

*2023년 4/4분기 이자율 기준이며 분기별 변동금리로 기채 청구 시 해당 금리 적용 예정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 예정가격 감액 매도(안)

- 김종철 의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이사회 및 교육부로부터 기 허가받은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241-3외 7필지, 총 7,982㎡)에 대하여 총 4번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매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기본재산 처분 관리 지침에 의거, 허가금액(약 41억원)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매각금액을 감액하여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매도가격을 감액하더라도 매각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산 손실 또한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학교측에서 제출한 감액 매도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

간인(서명)	김종철	이광호	
--------	-----	-----	---

켜보면서 추후에 재논의하도록 제안하자, 이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제3호 안건은 승인을 보류하다.

(4) 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보수규정 개정(안),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복무규정 개정(안) 등 3건의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가) 보수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직제 개편 후속조치로 보직 신설(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장)에 따른 보직수당 신설, 규정 정비를 위해 본칙에 직급수당 명시, 누락된 초과강의료 별표 번호를 추가 등

(나)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문적 연계성이 높은 2개 학과에 소속되는 이중 소속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외부겸직 특례 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다) 복무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른 외부겸직 특례사항을 복무규정에 반영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4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각각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사항

(가)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행일 : 2023년 11월 21일

(나)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행일 : 2023년 11월 21일

(다) 복무개정(안)


-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시행일 : 2023년 11월 21일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보수규정 신·구 대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복무규정 신·구 대비표

간인(서명)	김종철	김광호	
--------	-----	-----	---

(5)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변경 제출(안)

- 김종철 의장 :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최근 교육부는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에 대하여 자금조달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금번 이사회 안건으로 준비하지 못했음을 설명함.
- 김종철 의장 : 송도부지에 대한 캠퍼스 개발 추진 경과, 자금 투입 내역, 세 금 부과 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 향후 추진 방향으로 위치변경계획서 중 자금조달 계획을 보완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캠퍼스 개발 등 각종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송도캠퍼스개발추진단(가칭) 구성을 제안함.
- 이어 이사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송도캠퍼스 활용 방안 중에서 상업용 시설 개발 등 법률적 제약이 있는 대안은 검토해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치변경계획서를 보완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후 캠퍼스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캠퍼스 개발과 더불어 수익창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면 좋겠음.
 - 대학교는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 재정만으로 송도캠퍼스를 개발·유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존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교육부로부터 캠퍼스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에 착수하면 조세 감면 절차 및 협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임.
 - 송도부지는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제약조건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캠퍼스로 추진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외부 기업과의 협력은 법률적 검토 후에 신중히 접근하기 바라며, 최근 인천광역시의 송도지역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맞춰 캠퍼스를 개발하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학 독립적으로 송도캠퍼스를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인(서명)	김종철	이광호	
--------	-----	-----	---

학교법인과 대학이 공동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추진단 결성에 찬성함.

- 캠퍼스 개발 이외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상당하므로 당초 계획과 같이 캠퍼스로 개발하되, 향후 주변 여건을 보면서 확대 개발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재정 상황 등 학교 입장은 이해되나 계약서, 법령상의 제약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종전대로 캠퍼스 개발을 추진하되, 추진단을 구성하여 캠퍼스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같이 검토하면 좋겠음.
- 교육부는 송도캠퍼스에 대해 일부 보완 요청을 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맞춰 보완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음. 학교와 법인이 공동 책무를 갖고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찬성함.
- 송도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우리 대학의 첨단분야, 국제화 등을 접목하면 다양한 수익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추진단 구성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동의함.

○ 김종철 의장 :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종전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서 중에서 교사면적, 자금조달 계획 등을 보완하여 교육부에 다시 제출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고 검토하기 위해 송도캠퍼스개발추진단(가칭)을 구성하겠음을 묻자, 이에 대해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송도부지 관련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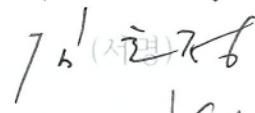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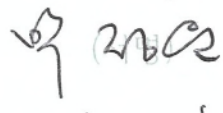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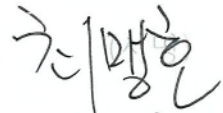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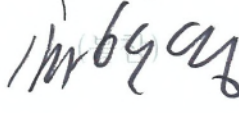

- 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서 중 법령에서 정한 교사면적 기준에 따른 재원 확보 등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보완하여 조속히 교육부에 다시 신청하기로 한다.
- 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송도캠퍼스개발추진단(가칭)」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추진단 단장에는 이돈구 이사를 선임하며, 이외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간인(서명)	김종철	이돈구	
--------	-----	-----	---

(6)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6호를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윤규섭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8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2023년 제10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11월 21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종철	
	이사	김동건	
	이사	김호정	
	이사	문휘창	
	이사	박정운	
	이사	양인집	
	이사	이돈구	
	이사	최맹호	
	감사	배한영	
	감사	윤규섭	

간인(서명)			
--------	---	--	---

(붙임)

한국의국어대학교 보수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8조 (강의료) ① (생략)</p> <p>② 전임교원의 기본시수와 <u>초과강의료</u>는 해당 교과목 학점에 의하되 매 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특별과정은 기본시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의료는 해당 대학원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8조(강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전임교원의 기본시수와 <u>초과강의료 <별표5></u>는 해당 교과목 학점에 의하되 매 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특별과정은 기본시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의료는 해당 대학원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별표 번호 추가								
<p>제11조 (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p> <p>1. 보직수당 <별표 6>, <별표 6-1></p> <p>2. ~ 5. (생략)</p> <p>(신설)</p> <p>6. 전임교원의 대체강의료는 제8조의 강의료에 따라 지급한다.</p>	<p>제11조(제수당) 총장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p> <p>1. 보직수당 <별표 6>, <별표 6-1></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직급수당 <별표 11></u></p> <p>7. 전임교원의 대체강의료는 제8조의 강의료에 따라 지급한다.</p>	별표 수정 호 추가 번호 순연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2) (적용) 제8조 2항의 개정은 본칙에 누락된 별표 번호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초과강의료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p> <p>(3) (적용) 제11조 6호의 개정은 본칙에 직급수당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직급수당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p>	부칙 신설								
<p><별표 6> 보직수당 (상여 및 정근수당 제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50%;">보직명</th> <th style="width: 50%;">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장 (생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총장 (이하 생략)</td> <td></td> </tr> </tbody> </table>	보직명	금액	총장 (생략)		(신설)		부총장 (이하 생략)		<p><별표 6> 보직수당 (상여 및 정근수당 제외)</p> <p style="margin-top: 20px;">※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장 보직수당 재원 : 캠퍼스타운 사업비</p>	수당 신설
보직명	금액									
총장 (생략)										
(신설)										
부총장 (이하 생략)										

간인(서명)	김정철	이민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27조 (교원의 소속변경) 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 교원의 소속 변경은 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p>	<p>제27조(교원의 소속변경) 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 교원의 소속 변경은 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u>제27조의 2(교원 이중 소속) 전임교원은 학제 간 교육 및 연구 발전을 위하여 원소속 이외의 다른 대학(원), 학과(부)·전공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u></p>	<p>조 신설 (이중 소속 제도 신설)</p>
<p>제29조 (영리사업 겸직금지) 교원은 본직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타 직업을 겸할 수 없다.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임직원 및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의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9조 (영리사업 겸직금지) 교원은 본직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타 직업을 겸할 수 없다. <u>다만, 관계 법령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른다.</u></p>	<p>자 구 수 정 (겸 직 특 례 내 용 정 비)</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신 설</p>

간인(서명)	김정철	서재은	
--------	-----	-----	---

(붙임)

한국의국어대학교 복무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p>제8조 (겸직의 금지) ① 교직원은 본직 외의 타 직업에 겸직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으며,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교의 출강(주 1회 3시간 이내에 한함) 2. 연구기관, 비영리기관의 비상임직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임직원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생략)</p>	<p>제8조(겸직의 금지) ① 교직원은 본직 외의 타 직업에 겸직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으며,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겸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교의 출강(주 1회 3시간 이내에 한함) 2. 연구기관, 비영리기관의 비상임직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임직원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화선도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략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p>② (현행과 같음)</p>	<p>호 추가 (겸직 허용 특례 추가)</p>
<p>(신설)</p>	<p>부 칙</p> <p>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신설</p>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호	
--------	-----	-----	---